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재산종합보험 과업지시서

2026. 07.



안전관리실 안전관리팀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 (1) 적절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 (2)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3)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6)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7)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9)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0)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1)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2)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3)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14)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15)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 (16)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 (17)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 (1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이에 우리 진흥원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KCA 재산종합보험 과업지시서

- ☐ 사 업 명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재산종합보험 가입
- ☐ 보험기간 : 2026.8.29. 00:01 ~ 2027.8.29. 00:01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며 사업예산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 사업예산 : 일천오백구십육만육백육십 원(₩15,960,660)
- ☐ 가입대상 : [별첨2] 재산종합보험 목적물 내역서 참조
- ☐ 피보험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목적물 소재지

구 분	주 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사	전라남도 빛가람로 76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부산 동구 초량중로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	대전 서구 계룡로 553번길 2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광주 서구 운천로 21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대구 수성구 청수로 6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27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주지사	제주 제주시 중앙로 265, 7층

☐ 가입대상 : 건물, 구축물, 기계설비, 비품 등

☐ 제 I 부문 재산종합위험

○ 보험가입금액

(단위: 원)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나주본사_건물	35,786,864,000
나주본사_비품/집기	21,201,113,376
부산본부	12,353,404,000
충청본부	7,311,463,000
전남본부	5,904,503,000
경북본부	6,845,112,000
전북본부	3,549,398,000
제주지사	895,639,000
합 계	93,847,496,376

○ 사고내역

(단위: 원)

사고일	사고내용	지급액	진행상태
2018.08.	어린이집 수도물 누수	2,500,000원	완료
2021.01	본원 업무동 1층~4층, 어린이집 누수	5,650,000원	완료
2021.07	집중폭우로 지하층 감지기 오작동으로 사옥시설 다량 누수	4,223,797원	완료

□ 제Ⅱ부분 기계 위험담보

○ 보험가입금액

(단위: 원)

구 분	보험가입금액
전기설비(본사)	1,947,871,000

- 보상대상 : 과부전압, 절연체의 하자, 단락, 누전, 방전, 정전기로 인한 손해

□ 제Ⅳ부분 제3자 배상책임위험담보

○ 시설소유관리자 및 주차장·체육시설 위험 담보

담보명	보상손해	유 형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	피보험자의 시설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따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건물 화재 등으로 주변 건물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등
주차장·체육시설 위험담보	피보험자의 주차장,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따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주차된 차량이 미확인 차량에 의해 파손된 경우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이 손상된 경우 등

○ 담보유형 및 보상한도

담보명	구 분	보상한도		공제 금액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시설소유(관리자) 위험담보	대인	1억원	1억원	100,000원
	대물	1억원	1억원	100,000원
주차장 위험담보	대인	1억원	1억원	100,000원
	대물	5천만원	5천만원	100,000원

○ 담보범위

구분	연면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본사	15,278.3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5,883.9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충청본부	4,026.5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남본부	3,293.4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3,260.34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북본부	2,248.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제주지사	540.77
부산본부_옥내주차장	879.18
전남본부_옥내주차장	704.02
전남본부_옥외주차장	190.0
경북본부_옥내주차장	336.33
경북본부_카리프트	1대

□ 제 I 부문(재산종합위험) 세부적용

- 재산종합보험 보통약관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 담보조항 : 사고금액의 10%한도
- 공권력 면책조항 : 적용
- 일시적 철거위험 담보조항 : 동일구내에 한하여 적용
- 소규모공사위험 담보조항 : 공사계약당 10억원 한도
- 추가재산 담보조항 : 추가재산당 10억원 한도
- 소방비용 담보조항 : 사고당 10억원 한도

- 긴급비용 담보조항 : 사고당 5억원 한도
- 손해방지비용 담보조항 : 적용
- 공공기관 조항 : 적용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 담보조항 : 적용
- ()% 부보 조건부 실손보상 조항 : 80%적용(단, 재고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메모1.보상기준 : 재조달가액 및 비례보상
- 메모2.공인된 가액평가 : 비적용
- 메모3.재고자산에 대한 보험료 정산 조항 : 비적용
- 메모4.보상한도액 : 보험가입금액 한도
- 메모5.자기부담금 : 0원

☐ 제Ⅱ부분(기계 위험) 세부적용

- 특별비용 담보조항 : 적용안함
- 일시적 철거 위험 담보조항 : 동일 구내에 한하여 적용
- 건축가, 조사자, 자문기술자 용역비용 담보조항 : 전용안함
- 보상기준 : 재조달가액 및 비례보상 기준
- 보상한도액: 보험가입금액한도
- 공인된 가액평가 : 적용안함
- 자기부담금 : 300,000원

☐ 제Ⅳ부분(제3자 배상책임위험) 세부적용

- 제Ⅳ부분 1. 일반 배상책임 위험 담보(손해사고기준) : 적용
- 제Ⅳ부분 2.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담보 : 비적용

-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보장(손해사고기준) : 비적용
- 오염배상책임 담보 : 비적용
- 사용자배상책임 담보 : 비적용
- 구외선박 배상책임 담보 : 비적용
- 화재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담보 : 비적용
- 구내 치료비 담보 : 비적용
- 가스배상책임 담보 : 비적용
- 물적 손해확장 담보 : 비적용
- 주차장 배상책임 담보 : 적용
- 전·자기장, 석면, 실리콘 위험 부담보
- 모든 제반비용은 보상한도액에 포함
- 건물, 구조물 이동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 원자력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 징벌적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 효능불발취 부담보
- 수탁물건 부담보 특별약관
-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은 대한민국에 한함